

외무공무원 대외직명기준 (제6조관련)

직무 및 대외직명		외 교	영 사
직렬 및 경력			
참사관급 이상 직위 경력자	실장급 이상 직위 및 특명전권 대사 경력자	특명전권대사·대사·특명전권공사·공사·대리대사	총영사
	공사급 직위(심의관을 제외한다) 및 총영사 경력자	특명전권대사·대사·특명전권공사·공사·대리대사·공사참사관	총영사·부총영사
	심의관·공사참사관 및 부총영사 경력자	특명전권대사·특명전권공사·공사·대리대사·공사참사관·참사관	총영사·부총영사
	참사관급 직위(공사참사관 및 부총영사를 제외한다) 경력자	공사·대리대사·공사참사관·참사관·1등서기관	총영사·부총영사·영사
참사관급 미만 직위 경력자	외교통상직렬	참사관·1등서기관·2등서기관·3등서기관	영사·부영사
	외무영사직렬	참사관·1등서기관·2등서기관·3등서기관	영사·부영사
	외교정보기술직렬	참사관·1등서기관·2등서기관·3등서기관	영사·부영사

비 고

1. 재외공관에 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은 당해 공무원의 계급 상당에 상응하는 외무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기준에 따라 외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.
2. 심의관의 범위에는 심의관급 파견자를 포함한다.